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및 그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(公衆)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1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 다. 삭제 <2022. 5. 9.>	법 제33조 제1항제2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라. 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	법 제33조 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마. 법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	법 제33조 제2항제2호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바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3조 제1항제3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